

**환경부
보도자료**

- ☐ 2004.12. 배포
☐ 사진 없음
☐ 총 7쪽

2004년 12월 31일 석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

대기보전국	박광석 과 장	전화	02-2110-7932
총량제도과	배치호 사무관	(메일)	pylonbch@me.go.kr

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정

- ◇ 제1종 내지 제3종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함
 - 자동차판매자는 연간저공해자동차보급기준이 고시된 후 3월 이내에 저공해자동차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
- ◇ 2007년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·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
 - 기존의 설치·운영중인 사업장은 신고를 하고 배출허용총량을 할당 받아야 함
- ◇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기존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보다 40% 이상 강화된 매연기준을 설정함
 - 2006년부터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, 정밀검사 결과 강화된 매연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,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교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
- ◇ 2005년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공급판매할 수 있는 도료의 휘발성 유기화합물(VOC) 함유기준을 설정함

- ☐ 환경부는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, 총량관리사업장의 허가·신고절차,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을 제정하여 공포(12.31)하였다.

□ 경유승용차의 시판의 전제조건인 하나였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은 동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예정임

□ 금번에 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- 제1종 내지 제3종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함으로써
 - 2005년부터 자동차판매자가 의무적으로 보급해야 하며,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를 구체화 함
 -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▲전기자동차 등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를 1종, ▲가스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를 2종, ▲휘발유, 경유자동차 중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와 가스자동차 중 질소산화물을 일정비율 이상 저감시킨 자동차를 3종 저공해자동차로 정함
 - 자동차판매자는 연간저공해자동차보급기준이 고시된 후 3월 이내에 저공해자동차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
- 2007년 7월 1일부터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·도지사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고, 연간 배출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아야 함
- 기존의 설치·운영중인 사업장 중 1종 규모의 사업장은 2007년 10월 31일까지 시·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고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아야 하며,
 - 2-3종 규모의 사업장은 2009년 10월 31일까지 시·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고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아야 함

-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(특정경유자동차)는 2006년 1월 1일부터 대폭 강화되는 매연 기준에 따라 매년 검사를 받도록 하고,
 - 검사 결과 기준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▲환경부장관이 인증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▲저공해엔진으로 개조·교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
 -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,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며, 장치 또는 엔진의 보증기간동안 검사를 면제함
 - 환경부는 특정경유자동차의 강화된 매연기준을 2006년도부터 적용하는 대신 2005년도에는 공공기관 및 차량을 일정수량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보유한 45천대의 차량에 대하여 소요비용을 전액 지원하면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, 저공해엔진 개조·교체 또는 조기폐차를 할 계획임
- 환경친화형 도료를 보급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대기관리권역에 공급·판매할 수 있는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(VOC) 함유기준을 도료의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설정하고,
 - 소형 소각시설(소각용량 200kg/시간 미만)의 먼지 및 황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기존보다 20%정도 강화하여 설정함

<참고자료>

붙임 :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주요내용

<붙임>

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주요내용

1. 배출시설의 범위

- ☐ 특별법상 배출시설의 범위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외에
 -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간당 증발량 2톤 이상의 보일러와 시간당 열량 1,238,000kcal 이상의 간접 가열하는 시설로 정함

2.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

- ☐ 제1종 저공해자동차
 - 전기자동차, 연료전지자동차 등과 같이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자동차
- ☐ 제2종 저공해자동차
 - CNG·LPG 사용 자동차,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
- ☐ 제3종 저공해자동차
 - 경유 또는 휘발유자동차 중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
 - 가스자동차 중 질소산화물(NOx)을 현행 제작차 배출허용기준보다 25~50% 이상 저감시킨 자동차

3. 저공해자동차보급계획서 수립·승인

- ☐ 대기관리권역에서 연간 3,000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자(자동차 판매자)는 「연간저공해자동차보급기준」이 고시된 후 3월 이내에 「저공해자동차보급계획서」를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
- ☐ 또한, 차량을 10대이상 보유한 공공기관은 신차 구매시 구매차량의 20% 이상을 저공해자동차(1종으로 환산)로 구매하여야 함

4. 총량관리사업장의 허가·신고절차 및 배출허용총량의 이전

- ☐ 2007년 7월 1일부터 총량관리사업장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·도지사에게 사업장설치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고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아야 함
- ☐ 기존의 설치·운영중인 사업장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총량제 적용 기준 이상인 사업장은 신고를 하여야 함
 - 1종 규모 사업장은 2007년 10월 31일까지 시·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고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아야 함
 - 2-3종 규모 사업장은 2009년 10월 31일까지 시·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고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아야 함
- ☐ 배출허용총량의 이전
 -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매매 등을 통하여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양을 정함

1차년도	2~3차년도	4~5차년도
배출허용총량의 20%	배출허용총량의 30%	배출허용총량의 50%

5. 특정경유자동차 관리 관련

☐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

-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(특정경유자동차)의 매년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함

차종	적용일자	제작일자	부하 검사방법		무부하급속 검사방법	
			대기환경 보전법	특별법	대기환경 보전법	특별법
차량 총중량 3.5톤 미만 자동차	'06. 1. 1 부터 '06. 12. 31까지	'00. 12. 31 이전	60%이하	40%이하	55%이하	35%이하
		'01. 1. 1 이후	60%이하	35%이하	45%이하	30%이하
	'07. 1. 1 이후	'00. 12. 31 이전	60%이하	35%이하	55%이하	30%이하
		'01. 1. 1 이후	60%이하	30%이하	45%이하	25%이하
차량 총중량 3.5톤 이상 자동차	'06. 1. 1 부터 '06. 12. 31까지	'00. 12. 31 이전	60%이하	30%이하	45%이하	25%이하
		'01. 1. 1 이후	60%이하	25%이하	40%이하	20%이하
	'07. 1. 1 이후	'00. 12. 31 이전	60%이하	25%이하	45%이하	20%이하
		'01. 1. 1 이후	60%이하	20%이하	40%이하	15%이하

- ☐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'06년 1월 1일부터 특정경유자동차 매년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함
- ☐ 검사결과 불합격한 차량의 소유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,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
 -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·교체한 경우 당해 장치 또는 엔진의 보증기간 동안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면제함
- ☐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배출가스 저감효율을 정하고,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·공급·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

○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

구 분	저감효율(%)	보증기간
제1종 배출가스 저감장치	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70% 이상	3년 또는 16만km
제2종 배출가스 저감장치	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50% 이상	3년 또는 8만km
제3종 배출가스 저감장치	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25% 이상	3년 또는 8만km

○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

구분	저감효율	보증기간
가스엔진	당해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 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당해 자 동차가 인증을 받은 당시의 가스자동차 제작 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	3년 또는 8만km
경유엔진	당해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 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개조 또 는 교체하는 당시의 경유자동차 제작차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할 것	

6. 기타 사항

☐ 대기관리권역에 공급·판매할 수 있는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(VOC) 함유기준을 도료의 용도별로 '05년 7월 1일 이후 적용 및 '07년 1월 1일 이후 적용기준으로 정함

☐ 소형 소각시설(소각용량 200kg/시간 미만)의 먼지 및 황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기존보다 20%정도 강화하여 설정함

○ 황산화물 : 100ppm → 70ppm

○ 먼지 : 100mg/Sm³ → 80mg/Sm³